

## 보도자료

2011년 12월 6일(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홍진배 과장(☎750-2730)  
인터넷정책과 김도환 사무관(☎750-2742)hwan@kcc.go.kr

# 「.com」, 「.net」, 「.info」 이은 새로운 일반최상위도메인 신청 가능해진다

- 국제인터넷기구, 일반최상위도메인 2012년부터 개방
- 방통위, 가이드마련하고 희망기업에 기술적, 행정적 지원할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는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신청과 관련한 『신규 gTLD 생성 지지 및 이의제기 가이드(version 1)』 (이하 'gTLD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gTLD**(generic Top Level Domain)란 나라를 의미하는 .kr, .한국, .us 등의 국가도메인(ccTLD)과 달리 .com, .net, .info 등 일반문자열을 사용하는 도메인으로 현재 23개

동 gTLD 가이드는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지난 6월에 최종 확정된 gTLD 개방정책(현재 gTLD 23개→최대 1,000개까지 신규 생성)에 대비한 것으로 ICANN의 신규 gTLD 생성 정책 주요내용, 국내 이해관계자 대응방안, 정부의 지지 및 이의제기 방침 등의 안내사항을 담았다.

※ **ICANN**(국제인터넷주소기구,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도메인네임 및 IP주소 등 글로벌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비상무성이 설립한 비영리민간법인

**gTLD 가이드의 주요내용은 ▲ICANN의 신규 gTLD 정책인 gTLD 신청자격(법인만 가능), 문자형태(영문은 세글자 이상, 다국어는**

두글자 이상), 소요비용(건당 18만\$), 이의제기 방침 등과 ▲신청 문자열에 대한 지지 또는 이의제기 주체(지역명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명의 문자열은 방통위 등)를 명확히 하여 신청기업이 gTLD 생성 추진시 혼란이 없도록 했다.

한편, 국가도메인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국내 신규 gTLD 신청 사업자에게 도메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무상 이전하고, gTLD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행정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KISA의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2월 20일 까지 지원 신청서를 KISA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ICANN의 gTLD 시장 개방으로 국내기업의 인터넷 도메인 시장 진출 기회는 물론 기업명을 활용한 gTLD(예: .삼성, .현대, .엘지) 생성으로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gTLD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TLD 가이드 및 희망 사업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http://도메인.한국' 또는 ☎ 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신규 gTLD 생성 지지 및 이의제기 가이드'. 끝.

[붙임]



---

#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생성 지지 및 이의제기 가이드(ver.1)

---

제정일자 : 2011. 11. 21

본 가이드의 내용은 ICANN의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목 차

I. 가이드 개요 .....	1
1. 배 경 .....	1
2. 목 적 .....	1
3. 적용대상 .....	1
II. 도메인 개요 .....	2
1. 도메인이란? .....	2
2. 신규 gTLD란? .....	2
3. 국제인터넷주소기관이란? .....	3
III. 신규 gTLD 생성 정책 주요내용 .....	4
1. 생성 가능 문자열 및 신청자격 .....	4
2. 신청방법 및 신청서 내용 .....	4
3. 신청서 평가 절차 .....	5
IV. 신규 gTLD 신청에 대한 ICANN 이의제기 제도 .....	6
1. GAC을 통한 이의제기 제도 .....	6
2. 분쟁해결서비스기관(DRSP)을 통한 이의제기 제도 .....	8
V. 이해관계자 대응방안 .....	9
1. 제3자의 신규 gTLD 신청에 대한 지지 .....	9
2. 제3자의 신규 gTLD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	9
VI. 신규 gTLD 문자열별 지지 및 이의제기 방침 .....	10
1. 지지 방침 .....	10
2. 이의제기 방침 .....	12
VII. 관련 문의 및 이의제기 의견서 접수처 .....	14
1. 관련 문의 .....	14
2. 이의제기 의견서 접수처 .....	14
첨부1. 신규 gTLD 이의제기 의견서 양식 .....	15
첨부2. 약어정리 .....	16

# I. 가이드 개요

---

## 1. 배 경

- 국제인터넷주소기관(ICANN)에서 2008년도 6월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도입을 결정하고, 2011년 6월 신규 gTLD 생성 정책을 최종 확정
  - ※ 신규 gTLD 생성 정책 확정으로 gTLD가 다수 늘어날 전망(현재 23개)
- 인터넷주소자원예관한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인터넷주소 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마련

## 2. 목 적

- 「신규 gTLD 생성 지지 및 이의제기 가이드」는 국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신규 gTLD 신청 및 절차 등의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gTLD 신청시 필요에 따라 정부지지 또는 이의제기 가능 범위와 절차를 정하기 위함

## 3. 적용대상

-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신규 gTLD 이해관계자 누구나

## II. 도메인 개요

### 1. 도메인이란?

- o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 필요한 숫자체계의 IP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 문자로 표현한 인터넷 주소
- o 도메인은 .kr, .us 등과 같은 국가 코드를 사용한 도메인인 ccTLD와 국가에 관계없이 등록인의 목적에 따라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com(회사), .net(네트워크 관련 기관), .org(비영리기관) 등과 같은 gTLD로 분류

구분	국가도메인 (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일반도메인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
영문	.kr, .jp, .cn, .us 등 (247개)	.com, .net, .org 등 (23개)
다국어	.한국, .中國 등	.은행, .회사 등 ('12년 생성 예정)

### 2. 신규 gTLD란?

- o 현재 사용되고 있는 gTLD 외에 새롭게 생성되는 영문 및 다국어(IDN,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도메인
- ※ 현재 사용되고 있는 gTLD : .com, .net, .org, .mil, .gov, .edu, .int, .biz, .info, .name, .pro, .aero, .asia, .cat, .coop, .jobs, .mobi, .museum, .tel, .travel, .arpa, .post, .xxx 이상 23개
- ※ IDN : 영문도메인이 아닌 한글과 같은 자국어를 사용한 도메인

### 3. 국제인터넷주소기관이란?

- o 국제인터넷주소기관(ICANN)은 1998년 도메인 및 IP주소 등 글로벌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비상무성이 설립한 비영리민간법인으로 국가도메인 및 일반도메인 생성을 결정
- GAC(정부자문위원회) : 각 국의 정부 대표가 참여하여 ICANN 정책을 정부 및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이사회에 직접 전달하거나 이사회에 자문 역할(방통위 활동 중)
- ccNSO(국가도메인이름지원기구) : 각 국의 국가도메인 관리기관이 참여하여 ccTLD 관리기관의 합의된 의견 도출 및 ccTLD 관련 주요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기구(KISA 활동 중)



<ICANN 조직도>

### III. 신규 gTLD 생성 정책 주요내용

---

#### 1. 생성 가능 문자열 및 신청자격

##### ○ 생성 가능 문자열

- 지역명(.서울, .seoul, .paris, .tokyo), 일반명사(.love, .earth, .게임), 브랜드명(.kia, .삼성) 등 영문은 3글자 이상, 非영문은 2글자 이상 가능

##### ○ 신청자격

- 신청 시점에 실제 존속을 증명할 수 있고, 신규 gTLD 운영에 필요한 정책·기술적 역량과 신청소요비용·시스템 구축 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기업(corporations), 단체(organizations), 기관(institutions) 해당 (개인 불가)
- 지역명 문자열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경우, 해당 문자열 관련 정부로부터 받은 '지지' 또는 '반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필요

#### 2. 신청방법 및 신청서 내용

##### ○ 신청방법

- 2012년 1월 12일 부터 4월 12일 까지 ICANN 홈페이지(<http://newgtlds.icann.org>)에서 신청서 제출, 최소 9개월에서 2년 이상의 평가기간을 거쳐 생성 가능
- ICANN에 납부하는 기본 신청비용은 USD185,000(약 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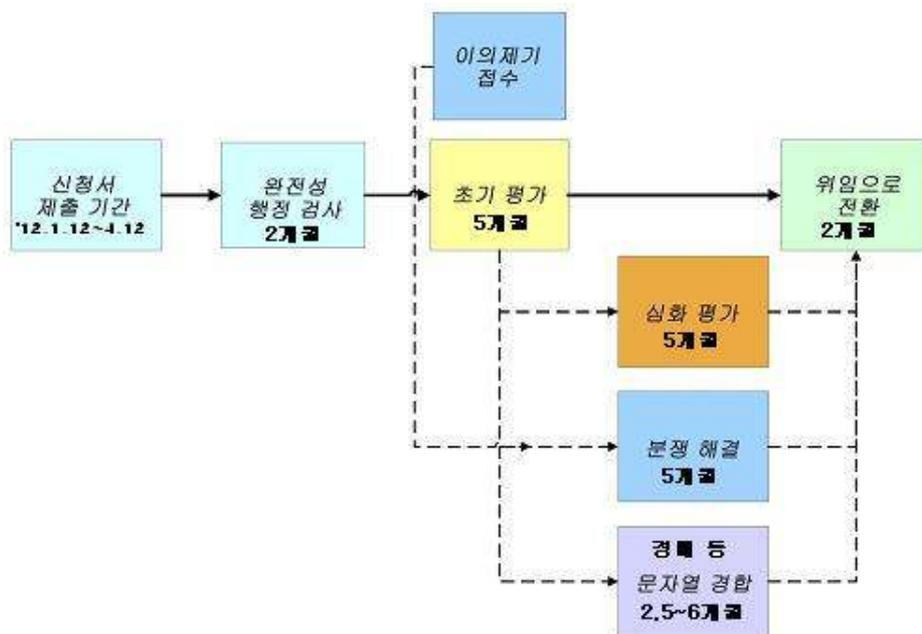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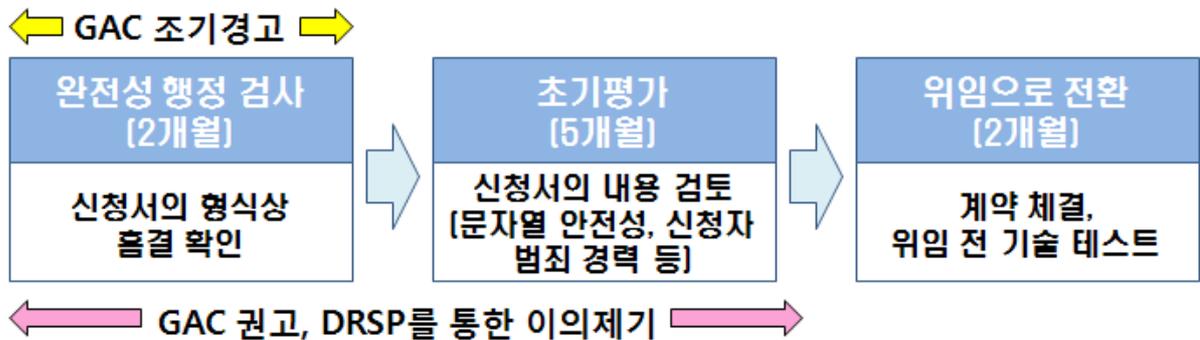
※ 기본 신청비용 외 시스템 구축 및 신규 gTLD 운영에 최소 5억 ~ 수십억 원 필요

##### ○ 신청서 내용

- 신청서는 총 50개 문항이며, 평가 내용은 기관 및 신청자의 범죄기록 등 검토(1번~12번), 문자열 안정성 및 중복성 등 검토(13번~22번), 기술 역량 평가(23번~44번), 재정력 평가(45번~50번)로 구성

### 3. 신청서 평가 절차

- 단순절차는 9개월, 복합절차는 20개월 또는 그 이상 소요 예상
  - 단순절차는 행정검사, 초기평가를 통과하여 위임까지 약 9개월 소요되는 절차
  - 복합절차는 초기평가에 통과하지 못하고 심화평가나 분쟁해결 또는 문자열 경합 절차(경매 등)를 거치게 되어 9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
- ※ ICANN에 접수되는 전체 신청건수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짐



<신규 gTLD 신청 및 평가 위임 절차>

## IV. 신규 gTLD 신청에 대한 ICANN 이의제기 제도

ICANN의 신규 gTLD 생성 정책(gTLD Applicant Guidebook)에 따르면, 정부는 GAC을 통한 조기경고 및 권고 제도(무료)를 통해 ICANN에 직접 이의제기 가능하며,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이의제기 분야별로 해당하는 분쟁해결서비스기관(DRSP)을 통해 이의제기(유료) 가능

### 1. GAC을 통한 이의제기 제도

#### 가. GAC 조기경고

- (개념) 완전성 행정 검사 중 ~ 초기평가 시작 전까지, 정부가 GAC을 통해 이의제기한 사실을 신규 gTLD 신청자에게 알려주어 신청서 철회 및 환불(조기경고를 받은 신청자에 한해 신청비의 80% 환불) 기회를 주는 제도
- (범위) 민감하거나 문제가 있는 문자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지만 GAC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음
  - 역사/문화/사회적 신분 구성에 기반을 둔 특정 그룹 또는 이해관계자 (국적, 민족 또는 인종, 종교, 신념, 문화 또는 특정 사회 출신이나 그룹, 정치적 의견, 소수민족구성원, 장애인, 나이, 어학 또는 언어)를 나타내거나 포함하는 문자열
  - 각 국의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영향을 받는 문자열
  - 온라인 사기 또는 남용에 취약한 사람 및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열
- (절차) 각 국 정부가 GAC에 의견 개진 → GAC 의장 명의로 ICANN에 서면 제출 → ICANN은 신규 gTLD 신청자에게 경고 받은 사실 통보 → 신청자의 검토(철회 결정 또는 계속 진행) → GAC 조기경고 절차 종료

## 나. GAC 권고

- (개념) GAC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건에 대해 GAC 의장 명의로 작성된 의견서(만장일치는 강한 효력을 가짐)를 ICANN에 전달하면 이사회가 심각하게 검토 후 신청 거절을 결정하는 제도
- (범위) GAC 권고를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각 국의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민감한 이슈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
- (절차) 각 국 정부가 GAC에 의견 개진 → GAC 의장 명의로 ICANN에 서면 제출 → ICANN은 신규 gTLD 신청자에게 권고 받은 사실 통보 → 신청자 답변 → ICANN 이사회의 검토(권고 수용 또는 거절 결정) → 신청자에게 결과통보 또는 GAC 추가협의 → GAC 권고 절차 종료

## 2. 분쟁해결서비스기관(DRSP)을 통한 이의제기 제도

- (개념) ICANN은 신규 gTLD 신청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이해관계 및 권리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이의제기자는 이의제기 범위별로 지정된 각 분쟁해결서비스기관(DRSP)에 직접 이의제기 신청
- (절차) 이의제기 자격이 있는 당사자 누구나 해당 분쟁해결서비스기관(DRSP)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의제기 신청서 작성 → 접수비 납부 → 접수 완료

구 분	이의제기 범위	이의제기 자격	분쟁해결서비스기관(DRSP)
1	문자열 혼동 (이용자 혼란)	기존 gTLD 관리기관 또는 신규 gTLD 신청자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2	법적(지적재산권) 권리 침해	권리 보유자(상표권자 및 미등록 상표권자도 포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중재조정센터(AMO)
3	공공 이익 제한 (국제법 근거)	제한없음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전문성센터(ICE)
4	커뮤니티 이해관계 침해	공인기관 (언어 공동체, 종교단체 등)	

※ '커뮤니티'는 공인된 기관으로 종교단체, 언어 공동체, 협회, 단체 등이 해당되며 커뮤니티와의 관계, 커뮤니티의 실체, 세계적 인지도, 존속 기간 등에 관한 증빙 필요

- (기간 및 비용) 전체 신청자 리스트의 공개시점(완전성 행정 검사 기간 중) 부터 초기평가(5개월)가 완료되고 2주 후 접수마감, 비용은 아래 참조  
(단위 : USD)

구 분	이의제기 범위	이의제기 접수비 (환불불가)	분쟁해결비용 (승소시 100% 환불)
1	문자열 혼동 (이용자 혼란)	· (기본) 서류접수 : 2,750/건 · (추가) 심리신청 : 1,250/건	· (기본) 서면심리 : 6,000/건 · (선택) 대면심리 : 3,000(출장비 별도)/건
2	법적권리 침해 (지적재산권)	1인 패널비 · 2,000/건	1인 패널비 · 1건vs단독신청자 : 8,000/건 · 1건vs다수신청자 : 4,800/건 · 다수건vs다수신청자 : 6,400/건
		3인 패널비 · 3,000/건	3인 패널비 · 1건vs단독신청자 : 20,000/건 · 1건vs다수신청자 : 12,000/건 · 다수건vs다수신청자 : 16,000/건
3	공공 이익 제한 (국제법 근거)	미확정	미확정
4	커뮤니티 이해관계 침해	미확정	미확정

※ ICANN이 예측한 분쟁해결 비용 범위는 USD2,000~USD8,000이고, 패널비는 1인 기준 USD32,000~USD56,000, 3인 기준 USD70,000~USD122,000으로 책정, 실제 비용은 DRSP가 정함

## V. 이해관계자 대응방안

ICANN의 신규 gTLD 정책에 따라 누구든지 신규 gTLD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지지' 또는 '이의제기'를 선택할 수 있음

### 1. 제3자의 신규 gTLD 신청에 대한 지지

- 신규 gTLD 신청인으로부터 신규 gTLD 생성 지지를 요청받은 당사자는, 자체 판단으로 지지여부 선택 가능
  - 지역명 문자열의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가 지지 여부 선택 가능
  - 지역명 외 문자열의 경우, 방통위가 신청문자열 및 운영계획 등을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지지 여부 선택 가능

### 2. 제3자의 신규 gTLD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 ICANN에 접수된 gTLD 신청 중 신규 gTLD로 생성되는 것에 반대하는 문자열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 가능
    - 지역명 문자열의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가 이의제기 가능
    - 지역명 외 문자열의 경우, 이의제기 의견이 있는 자가 직접 이의제기 하거나, 방통위에 의견 제출
- ※ ICANN에 접수된 gTLD 문자열 확인은 홈페이지([www.icann.org](http://www.icann.org))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2012년 4월 말 부터 5월 중순까지로 예상(ICANN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VI. 신규 gTLD 문자열별 지지 및 이의제기 방침

### 1. 지지 방침

- 지역명 문자열을 신규 gTLD로 신청하는 신청자는 관련 광역지자체의 '지지' 또는 '반대 없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신청자의 지지 요청을 받은 해당 광역지자체는 신청 문자열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지 여부 선택 가능
- 지역명 외 문자열을 신규 gTLD로 신청하는 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방통위에 '지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지지 요청을 받은 방통위는 신청 문자열 및 운영계획 등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지 여부 선택 가능

### 가. 지역명 문자열

#### (1) 문자열 범위

- 우리나라 지역명, 행정구역명, 지방자치단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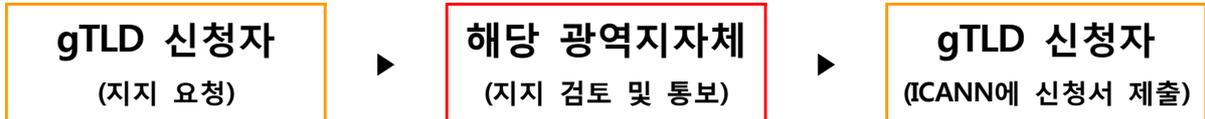
<표1. 지역명 문자열 범위>

구분	내 용	예시
지역명	○ 우리나라 수도명 (ISO 3166-1근거)	.seoul, .서울 등
	○ 우리나라 수도명 외 지역명	.Busan, .Jeju, .Kangwon, .濟州, 독도 등
	○ 지역명 관련 파생어 - 관광명소, 거리이름 등	.jirisan, .지리산, .智異山, .대학로 등
행정구역명	○ 지역명에 대한 행정구역명	.Sangjusi,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명	○ 위의 지역명 및 행정구역명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명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 (2) 지지 주체

- 해당 광역지자체

## (3) 절차



## 나. 지역명 외 문자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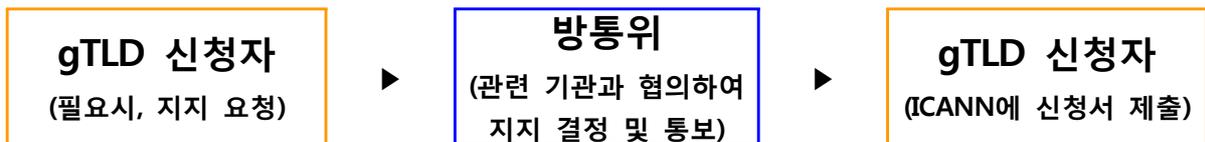
### (1) 문자열 범위

- 지역명 외 모든 문자열

### (2) 지지 주체

- 방통위

### (3) 절차



※ 신청인은 '지지'가 없어도 신청서 제출 가능

## 2. 이의제기 방침

- 지역명 문자열이 신규 gTLD로 신청된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는 이의제기 가능
- 지역명 외 문자열이 신규 gTLD로 신청된 경우, 이의제기 의견이 있는 자가 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하면 방통위는 그 의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의제기 가능

### 가. 지역명 문자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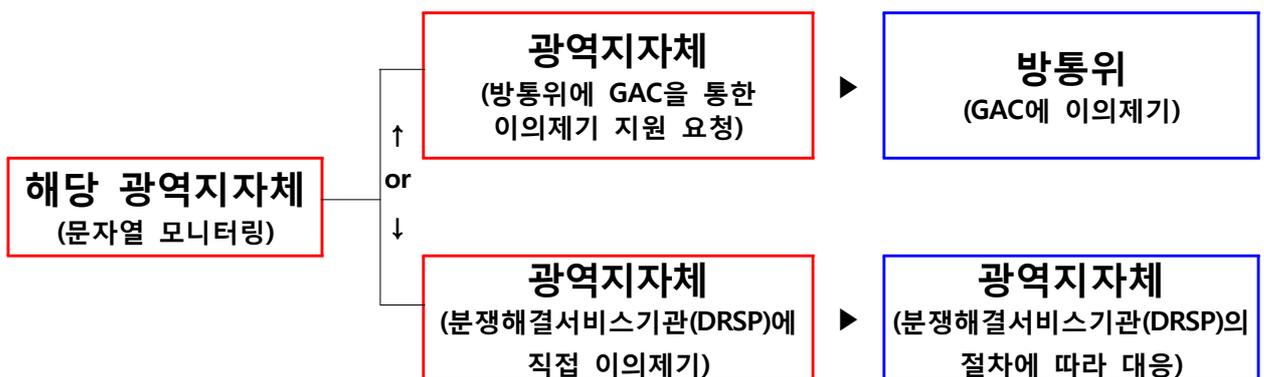
#### (1) 문자열 범위

- 10페이지 <표1. 지역명 문자열 범위>와 동일

#### (2) 이의제기자

- 해당 광역지자체

#### (3) 절차



## 나. 지역명 외 문자열

### (1) 문자열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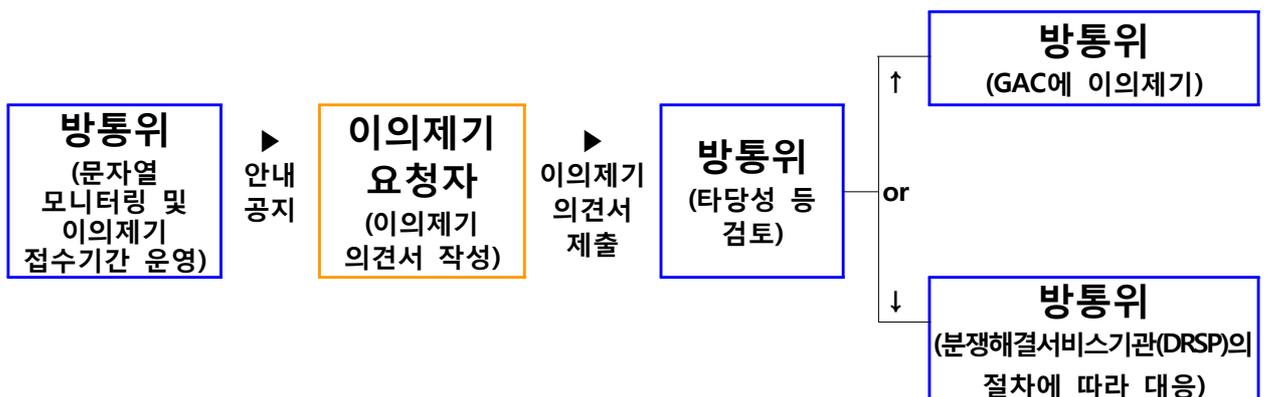
- GAC을 통한 이의제기 범위에 해당하는 문자열
- 분쟁해결서비스기관(DRSP)을 통한 이의제기 범위 중 '3. 공공이익제한'에 해당하는 문자열

※ 분쟁해결서비스기관(DRSP)을 통한 이의제기 범위 중 '1. 문자열 혼동', '2. 법적권리 침해', '4. 커뮤니티 이해관계 침해'에 해당하는 문자열은 이의제기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이의제기 가능

### (2) 이의제기 요청 방법

- 이의제기 의견이 있는 자는 첨부1의 '신규 gTLD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통위에 제출

### (3) 절차



## VII. **관련 문의 및 이의제기 의견서 접수처**

---

### **1. 관련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인터넷주소담당  
- 연락처 : 02) 750-2742

### **2. 이의제기 의견서 접수처**

- 이의제기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문 및 전자우편 접수  
- 접수처 : hwan@kcc.go.kr

[첨부1] 신규 gTLD 이의제기 의견서 양식

신규 gTLD 이의제기 의견서				
구분		기재란		
신청인	성명	한글	㉠ 또는 서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전화	(연락처1)	(연락처2)
		주소	(우)	
	소속	전화		
주소		(우)		
이의제기 의견	이의제기 문자열			
	관련근거 (택1, ○ 표시)	국가적 상징성을 갖는 문자열 ( )	국내법 위반 문자열( )	
	사유	(해당 문자열과의 이해 관계 설명, 국내법 위반인 경우 해당 법 기재)		
	기타 의견			
제출일자 :                   년                   월                   일				

## [첨부2] 약어정리

###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 일반최상위도메인)**

·국가에 관계없이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com, .net 등과 같은 최상위도메인(DNS)으로, 현재까지 총 23개가 생성된 바 있으나 ICANN의 신규 gTLD 생성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IDN을 포함한 다수의 도메인이 생성될 예정

###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인터넷주소기관)**

·1998년 도메인네임 및 IP주소 등 글로벌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비상무성이 설립한 비영리민간법인으로 국가도메인 및 일반도메인 생성을 결정

### **IDN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다국어도메인)**

·영문도메인이 아닌 한글과 같은 자국어를 사용한 도메인

### **GAC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정부자문위원회)**

·ICANN 정책을 정부 및 공익 측면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이사회에 직접 전달하는 기구로, 우리나라(방통위 활동중)를 포함한 약 100여개 국가대표가 멤버로 참여 중

### **ccNSO (country code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국가도메인이름 지원기구)**

·ICANN 내에서 각 국 국가도메인 관리기관의 합의된 의견 도출 및 국가도메인 관련 주요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기구(KISA가 활동중)

### **gTLD Applicant Guidebook (gTLD 신청자 가이드북)**

·어떤 조직이라도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gTLD를 생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신청방법, 평가방법, 분쟁해결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문서

### **DRSP (Dispute Resolution Service Provider,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

·ICANN이 지정한 국제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ICDR, AMO, ICE 등이 있음

### **ICDR (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국제분쟁해결센터)**

·문자열 혼동으로 인한 신규 gTLD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DRSP 전문 기관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전세계 산업 소유권(발명·상표·디자인)과 저작물(문학·음악·사진 등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를 위해 1967년에 설립되어 1974년 UN 특별기구가 된 기구로써 제네바에 소재

### **AM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중재조정센터)**

·법적 권리 침해로 인한 신규 gTLD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DRSP 전문 기관

###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

·기업·공무원·전문가와 공공의식을 지닌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국제경제 협력기구로써 국가 간의 경제 문제를 심의하고 상업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1920년 파리에서 창립(우리나라는 1951년에 가입)

### **ICE (International Center of Expertise, 국제전문성센터)**

·공공의 이익 제한으로 인한 신규 gTLD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DRSP 전문 기관